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전재수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469

발의연월일: 2020. 6. 15.

발 의 자:전재수·전용기·송옥주

최인호 · 고용진 · 허 영

박재호 · 이병훈 · 이장섭

김철민 · 고영인 의원

(11일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면책을 받은 채무자라 하더라도 조세, 벌금·과태료,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및 「취업 후 학자금 상환특별법」에 따른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원리금 청구권 등은 책임이 면제되지 않도록 하고 있음.

그런데, 취업난이 계속되는 등 청년들의 경제사정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학자금대출 원리금을 면책채권에서 배제하는 것은 경제적 파탄에 빠진 개인채무자에 대한 경제적 재기와 갱생의 기회를 부여하려는 면책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원리금 청구권을 면책채권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삭제하여 면책을 받은 채무자가 학자금대출의 상환책임에서 벗어나게 함으로써 청년들에게 학자금대출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, 경제적 자립의 기회를 제공하려는 것임(안 제566조제9호 삭제).

법률 제 호
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566조제9호를 삭제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원 리금 청구권은 제56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 른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566조(면책의 효력) 면책을 받	제566조(면책의 효력)
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	
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	
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	
그 책임이 면제된다. 다만, 다	,
음 각호의 청구권에 대하여는	
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.	
1. ~ 8. (생 략)	1. ~ 8. (현행과 같음)
9. 「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	<u><삭 제></u>
법」에 따른 취업 후 상환	
학자금대출 원리금	